

제295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 례 안

(8건)

거 창 군

--- 목 차 ---

연번	의안명	담당부서	쪽수
1	거창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획예산 담당관	1
2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	7
3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기업과	11
4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화예술과	15
5	거창군 거창아트갤러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5
6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7	거창군 거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8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소득과	43

거창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6-94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부조리 행위 신고 대상 및 신고자 자격을 확대·개선하여 거창군의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고대상자 확대·개선함(안 제1조·제2조·제7조)

1) (현행) 군 소속 공무원 ⇒ (추가) 군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나. 신고자 자격 확대·개선함(안 제3조)

1) (현행) 공무원 및 군민 ⇒ (확대) 누구든지

다. 법령 재기재, 인용 문구 등 정비함(안 제3조·제11조·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19-318호)

나. 예산조치: 2026년 예산 6,000천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7. 21.~8. 1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불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속 공무원”을 “공무원 등”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중전의 제1호) 중 “부조리 신고 포상금”을 “포상금”으로 “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공무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다목 중 “공무원”을 “공무원등”으로 한다.

1.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군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제3조 조 제목 및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고자는”을 “제1항에 따른 부조리 행위 신고를 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3조(신고방법) ① 누구든지 부조리 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공무원부조리신고란, 전자우편, 우편, 방문 및 그 밖에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중 “관련부서 공무원”을 “관련 공무원등”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조례」”를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u>소속 공무원</u>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절차와 신고사항의 처리, 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 설> 1. “<u>부조리 신고 포상금</u>”이란 <u>군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u>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2. “<u>부조리 행위</u>”란 <u>공무원</u>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u>공무원</u>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행위 제3조(신고의 의무 및 방법) ① 제2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u>공무원 및 일반군민(이하 “신고자”라 한다)</u>은 군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창구, 이메일, 우편, 방문 및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u>공무원</u>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절차와 신고사항의 처리, 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u>공무원등</u>”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거창군(이하 “<u>군</u>”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u>군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u> 3. “<u>포상금</u>”이란 <u>공무원등</u>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2. “<u>부조리 행위</u>”란 <u>공무원등</u>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u>공무원등</u>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행위 제3조(신고방법) ① 누구든지 부조리 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공무원부조리신고란, 전자우편, 우편, 방문 및 그 밖에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할 수 있다.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대상,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신변보호) ① (생략)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의 관련부서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된다.

③ (생략)

제11조(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산정된 포상금은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급한다. 이 경우 포상금의 지급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③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조리 행위 신고를 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대상,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신변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의 관련 공무원등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산정된 포상금은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급한다. 이 경우 포상금의 지급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③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삭 제>

거창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1) 신고대상 확대: 군소속 공무원 + 군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 (재)거창군장학회, (재)거창문화재단, 거창군 체육회]

2) 포상금 지급

나. 관련조문: 정의(안 제2조), 포상금 지급(안 제11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나. 2026년 예산 기준

- 1) 부조리신고 민간인 보상금: 3,000천원
- 2) 부조리신고 공무원 포상금: 3,000천원

다. 2025년~2026년 현재까지 지급 0건

작성자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6-95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주민을 보호하는 이장에게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을 위한 재난특별활동비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이장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업무수행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특별활동비를 신설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 2) 「지방재정법」 제17조·제38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

나. 예산조치: 2027년 도비 본예산 반영 결과에 따라 군비 확보예정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6. 7. 20.~8. 10.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불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회의참석수당과 복지도우미 활동비를”을 “회의참석수당을”로 한다.

제6조의 제목“(사기진작)”을 “(사기진작 등을 위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기진작”을 “사기진작과 원활한 업무활동”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복지도우미 활동비: 월 1회

8. 재난특별활동비: 분기 1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실비 보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u>회의참석수당과 복지도우미 활동비를</u>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사기진작) 군수는 이장의 <u>사기진작</u>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 제공 2. 단체보험 가입 3. 모범이장의 선발 및 표창: 연 2회 4. 장기 우수이장 국내외 연수: 연 2회 5. 군단위 체육·수련대회: 연 1회 6. 건강검진 비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시 <u><신 설></u> <u><신 설></u>	제4조(실비 보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u>회의참석수당을</u>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사기진작 등을 위한 지원) 군수는 이장의 <u>사기진작과 원활한 업무활동을</u>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 제공 2. 단체보험 가입 3. 모범이장의 선발 및 표창: 연 2회 4. 장기 우수이장 국내외 연수: 연 2회 5. 군단위 체육·수련대회: 연 1회 6. 건강검진 비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시 <u>7. 복지도우미 활동비: 월 1회</u> <u>8. 재난특별활동비: 분기 1회</u>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재난특별활동비 지원

나. 관련조문: 사기진작 등을 위한 지원(안 제6조)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기간: 2027년 1분기~2031년 4분기

2) 비용: 1인당 분기별 10만원(연간 40만원)

3) 대상: 거창군 이장 267명

4) 경상남도 재원 분담안이 2027년도 당초 예산편성 요구
(2026. 8.) 시 확정 예정

5) 도비:군비 매칭비율을 4:6으로 예정

나. 추계의 결과

(단위: 만원)

구분	1차 연도 (2027년)	2차 연도 (2028년)	3차 연도 (2029년)	4차 연도 (2030년)	5차 연도 (2031년)	합계
총 비용	10,680	10,680	10,680	10,680	10,680	53,400
도비(40%)	4,272	4,272	4,272	4,272	4,272	21,360
군비(60%)	6,408	6,408	6,408	6,408	6,408	32,040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2027년 예산 추계

1. 총예산: 10,680만원

2. 군비: 6,408만원

3. 내역: 이장 267명 × 연 40만원

작성자 행정과장 정미영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6-96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범죄 위협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보장 물품이나 안전설비 등을 지원하고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장비 또는 경비 지원 신설함(안 제4조)
- 나. 협력체계 구축 신설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지방재정법」 제17조
-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9

나. 예산조치: 도비 지원 시 연계하여 시행할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6. 7. 21.~8. 10.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소상공인 육성을”을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 등을 지원하기”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장비 또는 경비 지원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거창경찰서,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소상공인 지원) ① 군수는 군의 <u>소상공인 육성을</u>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이자지원 2. 소상공인이 이자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때의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3.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 4.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지원 5. 경영환경개선 지원 6. 창업을 위한 정보제공자문 및 교육 지원 7. 제품의 홍보·마케팅 <u><신 설></u>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u><신 설></u>	제4조(소상공인 지원) ① 군수는 군의 <u>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 등을 지원하기</u>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이자지원 2. 소상공인이 이자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때의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3.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 4.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지원 5. 경영환경개선 지원 6. 창업을 위한 정보제공자문 및 교육 지원 7. 제품의 홍보·마케팅 8. <u>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장비 또는 경비 지원</u> 9.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원활한 <u>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거창경찰서,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u>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장비 또는 경비 지원
- 나. 관련조문: 소상공인 지원(안 제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 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 나. 국비 또는 도비 지원 시 연계하여 사업시행 예정
 - 1) 여성 및 1인 소상공인부터 지원하고 점차 지원대상 확대
 - 2) 거창군 소상공인 수
 - 가) 9,684명
 - 나)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자료 기준
 - 3)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작성자 경제기업과장 김인수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6-97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반영·정비하여 거창군의 건전한 공연활동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설치, 기능, 시설을 정함(안 제1조~제4조)
- 나. 입장의 제한, 이용 신청 및 제한, 이용 허가의 취소를 정함(안 제5조~제7조)
- 다. 이용료 기준·감면·반환, 관람료 감경을 정함(안 제8조·제9조, 별표 1·2)
- 라. 예술가족회원제 운영, 위탁을 정함(안 제10조·제11조)
- 마. 법령위배 등 삭제(현행 제12조, 제14조~제16조, 제22조·제23조)
 - 1) 사용료 특례: 기본 사용료 외에 이용자에게 관람료 수익금 일부를 추가 징수하는 것은 부당수익에 해당-국민권익위원회 권고
 - 2) 사용자의 설비, 사용자의 변상책임, 양도 및 전대금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민법」 제750조 등 적용
 - 3) 준용, 시행규칙: 「지방자치법」 제29조 등 재기재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공연법」 제8조,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61조
- 2)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 3)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제2020-410호)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불임
-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안 제5조·제9조)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군민의 예술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거창군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센터의 설치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연예술 육성과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해 거창군 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문화센터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거창읍 수남로 2181에 둔다.

제3조(기능) 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목적을 위한 공연이나 전시
 - 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 및 지방문화예술 발전
 - 나.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
 - 다. 국제문화예술의 교류 등
2. 문화예술·학술과 관련된 세미나, 회의, 교육, 행사 등

제4조(시설) 문화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장, 전시실, 야외공연장 등의 기본시설
2. 무대 및 전시예술행사 등에 필요한 부대설비

제5조(입장의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문화센터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자
2. 술에 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사람
4. 폭언·폭행·성희롱·성추행·성폭력·불법촬영 등 다른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문화센터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이용 신청 및 제한) ① 문화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이용 신청(변경 신청을 포함한다)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연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정치적 행사(「공직선거법」 제141조에 따른 당원집회는 제외한다), 특정 종교, 개인 및 단체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4. 그 밖에 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공익목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이용 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이용의 목적 및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허가를 받은 경우
5. 이용료를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8조(이용료 등) ① 군수는 문화센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는 시설을 이용하기 전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시·공연·행사 등: 면제
2. 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규칙으로 정하는 행사: 면제
3. 군 소재 초중고에서 주최하는 학예행사: 연 1회에 한정하여 별표 1에 따른 기본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 감경

③ 군수는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한다.

제9조(관람료의 감경) 군수는 군에서 주최·주관하는 공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7. 24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둔 다자녀 가구
8.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10조(예술가족회원제 운영) ① 군수는 문화센터 공연예술에 대한 군민의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예술가족회원제(이하 “회원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제에 가입한 사람에게는 관람료 등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회원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위탁) 군수는 문화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제3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문화센터 이용 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설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따라 문화센터 이용 신청을 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예술가족회원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따른 예술가족회원은 이 조례에 따른 예술가족회원으로 본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이용료(제8조제1항)

1. 공통사항

가. 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의 이용을 1회로 한다. 다만, 전시실의 이용 시간은 10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

- 1)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 2) 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
- 3) 야간: 18시부터 22시까지

나. 가목에 따른 이용 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이용한 경우에는 1회 이용으로 본다.

2. 기본시설 이용료

구분		이용료	비고
공연장	오전	100,000원	가. 연습 및 무대설치(철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이용료는 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를 추가 징수함 나. 당초 허가한 시간을 3분의 1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다음 회 이용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야간 시간 초과 시에는 야간 이용료를 기준으로 함 다. 토요일 및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이용료(연습 및 무대설치를 포함한다)는 기본시설 이용료의 20퍼센트를 추가 징수함
	오후	100,000원	
	야간	120,000원	
	1일	288,000원	
야외공연장	오전	20,000원	
	오후	20,000원	
	야간	30,000원	
	1일	63,000원	
대전시설		20,000원	
소전시설		9,000원	
분장실		20,000원	

3. 부대설비 이용료

구분			이용단위	장소	이용료	비고	
무대시설	오케스트라피트		1회 공연	공연장	20,000원	가. 연습에 이용되는 각종 부대시설 이용료는 해당 이용료의 50퍼센트로 함. 다만, 냉난방시설 이용료는 감면하지 아니함 나. 당초 허가한 시간을 3분의 1 초과한 경우 기준액의 100퍼센트를 추가 징수함 다. 영화상영을 위한 빔프로젝트 이용료는 면제함	
	승하강무대				30,000원		
	무용매트				40,000원		
	덧마루		작품당 100제곱미터 이상		20,000원		
			작품당 100제곱미터 미만		10,000원		
	합창대		작품당		20,000원		
영사시설	빔프로젝트		작품당		10,000원		
냉난방시설	공연장	냉방	1시간		대전시설		50,000원
		난방					50,000원
	대전시설	냉방	1일	소전시설	20,000원		
		난방			20,000원		
	소전시설	냉방	1일	9,000원			
		난방		9,000원			
피아노	대형		1회공연	공연장	20,000원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별도 부담함	
	소형		“	“	10,000원		
음향시설	음향반사판		“	“	20,000원	음악회만을 위한 음향반사판 이용료는 면제함	
	기본음향 (MIC 2대기본)		“	“	20,000원		
	유선MIC 2대 초과		1회공연 (대당)	“	2,000원		
	무선MIC		“	“	10,000원		
	녹음	디지털	1회공연	“	30,000원		
		카세트	“	“	10,000원		
의상 및 대·소도구			“	“	취득가액의 5%		
중계방송	TV		“	“	20,000원		
	라디오		“	“	10,000원		
조명시설	공연장기본조명		“	“	40,000원	팔로우핀 스포트라이트는 이용자가 별도 인력을 배치해야 함	
	팔로우핀 스포트라이트		“	“	20,000원		
	야외공연장		“	“	20,000원		
효과시설	드라이아이스기		“	“	20,000원		
	포그머신		“	“	10,000원		
그 밖의 시설	선전영화		“	“	10,000원		
	영화촬영		“	“	50,000원		
	사무실		임대 (제곱미터당)	문화센터 내	1,000원 (1개월)		

[별표 2] 이용료의 반환기준(제8조제3항 관련)

반환기준	반환금액
1. 군의 행사 또는 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을 못하게 된 경우	받은 이용료의 전액 및 이용료의 10퍼센트 배상
2.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	받은 이용료의 전액
4. 이용예정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	받은 이용료의 90퍼센트
5. 이용자가 착오로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비고: 그 밖에 이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이용료 기준 및 금액 변경, 위탁

나. 관련 조문: 이용료(안 별표 1), 위탁(안 제11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세입의 순감소액 추계 어려움

1) 냉난방시설 이용료 기준변경

가) 1회 70천원 ⇒ 1시간 50천원

나. 위탁료 없음(거창문화재단 출연금 16억3858만원)

작성자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거창군 거창아트갤러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2026-98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거창아트갤러리의 수준 높은 소장품 확보와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예술진흥 및 군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기금의 설치, 존속기한, 재원, 용도, 관리 및 운용을 정함(안 제2조~제6조)

다.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해촉, 제척·기파·회피를 정함(안 제7조~제9조)

라.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운영세칙을 정함(안 제10조~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3조

나. 예산조치: 2027년 예산 3억원 확보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및 예산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3. 18.~4. 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거창아트갤러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아트갤러리의 수준 높은 소장품 수집과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거창아트갤러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거창아트갤러리기금의 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아트갤러리(이하 “갤러리”라 한다)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자료의 수집과 갤러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거창아트갤러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거창군 출연금
2.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4. 갤러리의 관람료 등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소장품의 수집·관리·보존
2. 문화예술에 관한 자료의 전시·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안정성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문화예술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제7조(거창아트갤러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거창아트갤러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예술과장이 된다.
-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2. 위촉직 위원: 기금운용,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3명
-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 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위원이 안건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回避)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해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해야 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거창아트갤러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기금 조성 및 용도

나. 관련 조문: 거창아트갤러리기금의 설치(안 제2조),
기금의 재원(안 제4조), 기금의 용도(안 제5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1차연도 (2026년)	2차연도 (2027년)	3차연도 (2028년)	4차연도 (2029년)	5차연도 (2030년)
군비(100%)	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가. 상세내역

1) 군 출연금 3억원 × 4년 = 12억원

2)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전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작성자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거창군 아립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6-99	제출자	거창군수
----------	---------	-----	------

1. 제안 이유

향토문화예술 진흥과 군민화합의 장 역할을 해 온 아립예술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6년 설치된 아립예술제진흥기금에 대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다양한 지역 문화예술 활동장려와 문화예술도시 위상 확립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함(안 제4조)

(현행) 2026년 12월 31일 ⇒ (연장) 2031년 12월 31일

나.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용어 순화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나. 예산조치: 2026년도 기금 5억4290만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7. 6.~7. 2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불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 조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u>2026년 12월 31일까지</u> 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u>2031년 12월 31일까지</u> 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문화예술 관련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문화예술 관련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거창군 아립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아립예술제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아립예술제 행사 지원

나. 관련 조문: 존속 기한(안 제4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1차연도 (2027년)	2차연도 (2028년)	3차연도 (2029년)	4차연도 (2030년)	5차연도 (2031년)
기금	542,900	542,900	542,900	542,900	542,900
세출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매년 1천만원 이자수익발생 반영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2026년 기준 기금 5억4290만원
2. 아립예술마당 등 행사 지원: 1천만원

작성자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거창군 거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6-100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거창박물관의 무료관람, 박물관자료의 이용, 시설의 대관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박물관의 관람 및 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주민의 문화향유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위치, 용어를 정비함(안 제1조~제3조)
- 나. 관람료, 이용료, 대관료가 무료임을 명시함(안 제4조의2)
- 다. 박물관자료의 이용을 정함(안 제4조의3)
- 라. 서식이나 업무절차 등을 규칙으로 위임(안 제6조·제7조, 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4호서식)
- 마. 입장제한 사유 추가함(안 제8조)
- 바. 시설의 대관, 대관의 제한·신청을 정함(안 제11조~제13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제12조·제25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6. 7. 14.~8. 3.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안 제8조)

거창군 거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거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및 제2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박물관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거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박물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실, 수장고(收藏庫)
2. 특별전시실, 강당, 야외전시장 등

③ 박물관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거창읍 수남로 2183에 둔다.

제3조 조 제목 “(개관 및 휴관)”을 “(휴관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추석날”을 “추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군 홈페이지”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관람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를 무료로 한다.

1. 관람료
2. 제4조의3에 따른 박물관자료의 이용료
3. 제11조에 따른 시설 대관료

제4조의3(박물관자료의 이용) ① 군수는 박물관자료의 열람 신청이 있을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박물관자료를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공립박물관 등이 개최하는 전시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제6조제2항 중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증증서”를 “기증증서”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박물관자료의 관리 및 점검) ① 군수는 박물관자료 대장 등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연 1회 이상 박물관자료를 점검해야 한다.

제8조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동물을 동반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과 동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폭언·폭행·성희롱·성추행·성폭력·불법촬영 등 다른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시설의 대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박물관 설립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을 대관(貸館)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유산 보존·보급·전승과 학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학술활동
2.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3. 정부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 문화예술·학문의 진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② 시설의 대관 시간은 제4조에 따른 박물관 관람시간에 따르며, 그 밖의 시간에 대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대관의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대관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재난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2. 대관의 목적 및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정치적 행사(「공직선거법」 제141조에 따른 당원집회는 제외한다), 특정 종교, 개인 및 단체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4. 그 밖에 박물관 관리 및 운영, 공익목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대관의 신청 등) ①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대관 신청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대관 목적 등을 검토한 후 대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및 제2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박물관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거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거창읍 수남로 2181에 둔다.	제2조(설치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거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박물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실, 수장고(收藏庫) 2. 특별전시실, 강당, 야외전시장 등 ③ 박물관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거창읍 수남로 2183에 둔다.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진열품을 공개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 휴관일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박물관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박물관 게시판, 군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3조(휴관일)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진열품을 공개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 휴관일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박물관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박물관 게시판,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신 설>	제4조의2(관람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를 무료로 한다. 1. 관람료 2. 제4조의3에 따른 박물관자료의 이용료 3. 제11조에 따른 시설 대관료

<신 설>

제6조(박물관자료의 기증 및 기탁) ① 군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전시, 연구 등에 필요한 박물관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다.

② 박물관자료의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하고 기증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증증서를 발급한다.

③·④ (생 략)

제7조(박물관자료 관리 및 보고) ① 군수는 박물관자료를 별지 제2호서식의 카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을 작성하고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소장 박물관자료를 점검하여야 하고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박물관자료 점검 현황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
3.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

제4조의3(박물관자료의 이용) ① 군수는 박물관자료의 열람 신청이 있을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박물관자료를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공립박물관 등이 개최하는 전시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제6조(박물관자료의 기증 및 기탁) ① 군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전시, 연구 등에 필요한 박물관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다.

② 박물관자료의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하고 기증자에게 기증증서를 발급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7조(박물관자료의 관리 및 점검) ① 군수는 박물관자료 대장 등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연 1회 이상 박물관자료를 점검해야 한다.

제8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박물관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
3.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

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신 설>

<신 설>
5. 그 밖에 관람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신 설>
<신 설>

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동물을 동반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과 동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폭언·폭행·성희롱·성추행·성폭력·불법촬영 등 다른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람
7. 그 밖에 관람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1조(시설의 대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박물관 설립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을 대관(貸館)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유산 보존·보급·전승과 학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학술활동
2.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3. 정부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 문화예술·학문의 진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② 시설의 대관 시간은 제4조에 따른 박물관 관람시간에 따르며, 그 밖의 시간에 대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제12조(대관의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대관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재난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2. 대관의 목적 및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정치적 행사(「공직선거법」 제141조에 따른 당원집회는 제외한다),

	<u>특정 종교, 개인 및 단체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u> <u>4. 그 밖에 박물관 관리 및 운영, 공익목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u><신 설></u>	<u>제13조(대관의 신청 등) ①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대관 신청을 해야 한다.</u> <u>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대관 목적 등을 검토한 후 대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u>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6-101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업기계를 임대할 경우 농업기계 운송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현장까지 운송 및 회수하는 운송 지원 제도를 신설하여 거창군 농업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농업기계 이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운송 지원을 신설함(안 제9조의2)
- 나. 운송 지원에 따른 반환 등 정비함(안 제9조·제10조·제11조)
- 다. 임대료 감면대상 정비함(안 제11조·별표)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제8조의2
- 2) 「지방자치법」 제28조

나. 예산조치: 2026년도 예산 2억2300만원 확보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6. 7. 14.~8. 3.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안 별표)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료”를 “신청을 받고 신청순서에 따라 임대료(제9조의2에 따른 운송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운송 지원) ① 군수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농기계 운송(이하 “운송”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운송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기계 임대 신청 시 운송 가능여부·일정 등을 사전에 관리자와 협의할 것
2. 운송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인도하는 것이 원칙
3. 임차인에게 농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기계를 회수하는 경우로 한정

③ 군수는 편도 1만5천원의 운송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군수는 운송지원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하여 군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10조 조 제목 “(임대료)”를 “(임대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기계의 임대료는”을 “군수는 농기계 임대료를”로 하고 “결정하여 매년”을 “결정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임대료”를 “임대료 및 운송료”로 한다.

제11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제2호를 삭제한다.

제12조 조 제목 “(임대료의 반환)”을 “(임대료 등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임대료”를 “임대료 및 운송료”로 하며 “한다.”를 “한다. 다만, 제4호는 임대료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제2호·제4호 중 “농업기계”를 “농기계”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별지 제3호서식·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송지원 적용례) 제9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농기계 임대 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임대기준) ① 농기계의 임대는 공정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일전 15일 이내에 <u>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료</u>를 납부한 임차인에게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인을 우선하여 임대할 수 있다. ②~④ (생략)	제9조(임대기준) ① 농기계의 임대는 공정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일전 15일 이내에 <u>신청을 받고 신청순서에 따라 임대료(제9조의2에 따른 운송료를 포함한다)</u>를 납부한 임차인에게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인을 우선하여 임대할 수 있다. ②~④ (현행과 같음)
<신설>	제9조의2(운송 지원) ① 군수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농기계 운송(이하 “운송”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운송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기계 임대 신청 시 운송 가능여부·일정 등을 사전에 관리자와 협의할 것 2. 운송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인도하는 것이 원칙 3. 임차인에게 농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기계를 회수하는 경우로 한정 ③ 군수는 편도 1만5천원의 운송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군수는 운송지원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하여 <u>군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u>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10조(임대료) ① 농기계의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u>결정하여 매년</u> 군 홈페이지, 공보 등에 공고한다. 변동 시에도 같다. ② 임차인은 농기계의 임차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고 <u>임대료</u>를 농기계 출고 전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임대료 등) ① 군수는 농기계 <u>임대료를</u>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u>결정하여</u> 군 홈페이지, 공보 등에 공고한다. 변동 시에도 같다. ② 임차인은 농기계의 임차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고 <u>임대료 및 운송료</u>를 농기계 출고 전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

③ 농기계 사용에 따른 유류대금 및 그 밖의 농기계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11조(임대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과 관련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반액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4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둔 다자녀 가구로서 자가영농에 직접 사용할 경우
2. 전액면제: 재해·재난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임대료의 반환) 군수는 임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차인이 농업기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전액
2. 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인도하기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전액
3. 군수가 특별한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전액
4. 임차인이 계약 만료일 전에 농업기계를 반납한 경우: 사용한 일 단위로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야 한다.

③ 농기계 사용에 따른 유류대금 및 그 밖의 농기계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11조(임대료의 감면) 군수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과 관련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제12조(임대료 등의 반환) 군수는 임대료 및 운송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제4호는 임대료만 해당한다.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차인이 농기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전액
2. 임차인에게 농기계를 인도하기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전액
3. 군수가 특별한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전액
4. 임차인이 계약 만료일 전에 농기계를 반납한 경우: 사용한 일 단위로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별표]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준 <신 설>

감면대상	감면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가영농에 직접사용할 경우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다음의 법률에 따른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5. 24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둔 다자녀 가구	50퍼센트
재해·재난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퍼센트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

임대자	임차자				
거창군수	성명		남 ☐ 여 ☐	전화번호	
	주소				
임대차 농기계					
농기계명			수량	대	
부속작업기			수량	대	
			수량	대	
임대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일까지(일)	
임대료	금	원()			
농기계 운송	운송 지원				
	출고	장소	희망시간	거리	운송료
				킬로미터	원
	입고	장소	희망시간	거리	운송료
			킬로미터	원	
농기계 사용 계획					
기계명			농기계관리번호		
작업종류					
작업장소	읍면				
작업면적	제곱미터 (일 ———— 평)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임대차 계약 조건 -

1.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후 보관 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대기간 중 농기계가 파손되었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배상한다.
4. 임대기간 종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군수에게 반드시 이상유무 확인을 받고 반납한다.
5.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경비(수리비, 연료비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6. 임차인은 농기계를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7. 임차인은 농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농기계 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자: 거창군수 (인)

임차자: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농기계 임대차 계약대장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임차인			계약 농기계				임대료		<u>운송료</u>		작업내역		<u>출고</u>		입고		결재		
		주소	성명	성별	기종명	관리 번호	계약 일자	임대 기간	금액 (원)	수납 확인	<u>금액</u> (원)	<u>수납</u> 확인	작업 내용	면 적 (제곱 미터)	<u>예정</u> 일	<u>출고</u> 확인	예정 일	입고 확인	담당 자	담당	과장
								~													

〔별지 제4호서식〕

농기계 임대료 및 운송료 징수대장

(단위: 원)

[illegible]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농기계 운송지원에 따른 차량 구입 및 인건비

나. 관련 조문: 운송 지원(안 제9조의2)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1차연도 (2026년)	2차연도 (2027년)	3차연도 (2028년)	4차연도 (2029년)	5차연도 (2030년)	합계
군비	223,000	582,000	300,000	300,000	300,000	1,705,000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인건비

가. 기간제 6명, 2억8800만원

나. 2026년 3천만원, 2027년 2억5800만원

2. 운송 차량 구입비

가. 5대, 5억1700만원

나. 1톤 1대, 3.5톤 3대, 5.5톤 1대

1) 2026년: 2대, 1억9300만원

가) 1톤 1대, 5천1000천원

나) 5.5톤 1대, 1억4200만원

2) 2027년: 3대, 3억2400만원

가) 3.5톤 3대

나) 3×1억800만원

작성자 농업소득과장 곽칠식